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6311
----------	------

발의연월일 : 2024. 12. 9.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찬 성 자 : 169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에 따르고, 동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추경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에 있어라’며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엄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결

정적 역할을 한 것임.

또한 국회의원 추경호는 비상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침투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 접어들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점령 당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성공하기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2차례 통화해 시간을 끄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음.

이는 국회의원 추경호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 및 지연시켜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실현시키도록 깊이 관여한 것이자 계엄군에 의한 국회 점령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형법」 제87조와 제91조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모의 참여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함.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회의원 추경호는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 국회의원 추경호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임.

이뿐만 아니라 계엄해제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습하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수괴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본회의 투표시간에 맞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원천 부정한 것은 「국회법」 114조의2에 명시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자, 「국회법」 제148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헌법절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국회의원 추경호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 추경호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진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혼란을 주고, 표결이 임박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

원들을 ‘당사에 있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봉쇄하였음.

나. 국회의원 추경호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2시 29분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뒤인 22시 59분 비상의를 소집하였고, 23시 03분에는 국회라고 공지했고, 7분 후인 23시 09분에는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 23시 33분과 23시 49분에는 국회 예결위의장으로 재변경, 4일 0시 03분에는 당사 3층으로 재재변경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변경함. 12월 3일 23시 48분은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작했던 시점이고, 12월 4일 0시 8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겠다고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호소하던 상황이었음. 바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점령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 일촉즉발 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에 가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당사에 묶어두어 원천 봉쇄한 것임.

다. 또한 국회의원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12월 4일 00시 29분 국회의장이 전화통화로 ‘1시간 뒤(01시 30분 경)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1시간이면 빠듯하다.”며 본회의

개의 시간을 더 늦춰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경내에서 계엄군과 국회 직원, 보좌관, 당직자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4일 00시 38분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재차 알렸음에도 “들어갈 시간을 달라며”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고 거듭 시도하였음. 국회의원 추경호는 국회의장의 요청과 호소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본청 출입을 지휘하지 않았음.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2차례 표결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건대 계엄군의 국회 점령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본회의 개의를 늦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임. 이는 명백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행위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임.

라. 국회의원 추경호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 및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의 투표도 막으려고 하였음. “원내대표단 중 한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과 보도가 있었음. 국민의 안녕질서를 가장 우선해야 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성을 드러낸 것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고의성이 확인된 것임. 이는 헌법의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114조

의2에 명시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자, 「국회법」 제148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함.

마. 국회의원 추경호는 12월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집단퇴장을 지시하며 동일 시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투표권과 회의장 출입 권한을 방해함. 본회의장에 있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시키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참여권을 제한하여 최종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하게 만듦. 당일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투표결과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이 계엄사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주목하던 시기임에도 내란수괴의 탄핵조차도 가로막은 것임. 이는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임.

바.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추경호와 전화 통화를 하였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계엄을)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런이런 이유로 오늘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는 하나, 계엄 해제 표결
전후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회의원 추경호는 계엄 해제 요구안 투
표 불성립을 위한 모의를 한 것으로 보임.

사. 국회의원 추경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증언 등의 증거 자료 등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4.19. 선
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
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
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국회
의원 추경호는 내란수괴의 내란에 가담하였고,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추경호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77조
「국회법」 제24조, 제114조의2, 제148조의3, 「국회의원윤리실천규

범」 제1조, 제2조, 「형법」 제87조, 제91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안녕에 위해를 가하고, 국회를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현격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국회의원 추경호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